대전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용산 1블록 공동주택 호반써밋 그랜드파크 입주자모집공고

HOBAN SUMMIT
GRAND PARK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대전 용산지구 1블록 호반써밋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일반 관람공개하지 않으며 사이버 견본주택으로(http://hobansummit-djys.co.kr/)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항
※ 당첨자 대상으로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을 지정하여 개별 안내드릴 예정이며,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당첨자분들의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대전 용산지구 1블록 호반써밋은 분양 상담 전화(1566-2822)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9.18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유성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자격이 있으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①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 - 당첨일로부터 10년간 ②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7호) - 당첨일로부터 7년간
③토지임대주택(제1항 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 제2항 제7호가목) - 당첨일로부터 5년간 ④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 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 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 제2항 제1·2·4·6·8호)
-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당첨일로부터 5년 / 85초과 당첨일로부터 3년, 그 외 권역 : 85이하 당첨일로부터 3년 / 85초과 당첨일로부터 1년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18)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이상(2019.09.1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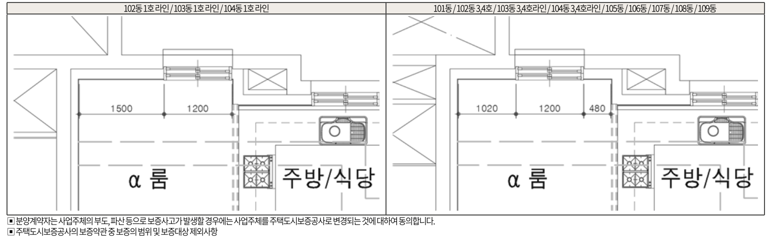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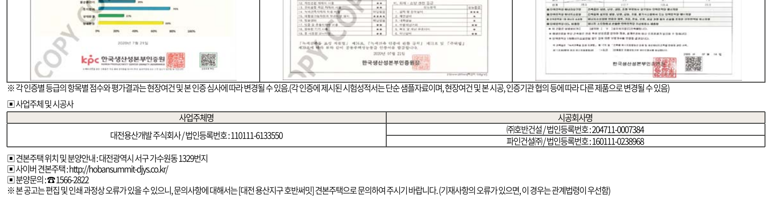
COPY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COPY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사업주체명	시공회사명
대전용산개발 주식회사 / 법인등록번호 : 110111-6133550	㈜호반건설 / 법인등록번호 : 204711-0007384 파인건설㈜ / 법인등록번호 : 160111-0238968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329번지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hobansummit-djys.co.kr/
▣ 분양문의 : ☎ 1566-2822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대전 용산지구 호반써밋]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으면, 이 경우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시행 대전용산개발(주)
시공 (주)호반건설 · 파인건설(주)
총 3,538세대 중 **1,747세대 금회공급**
1566-2822